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2662호)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09. 01.

고성군수

나. 회부일자 : 2023. 09. 04.

다. 상정·의결일자 : 2023. 09. 13.

기획행정위원회 상정·원안가결

2. 폐지이유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는 현 정부 및 민선 8기 고성군의 대북 정책 방향과 연계하여 고려할 때 지자체 차원의 대북 관련 사업 전개 가능성이 없는 등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조례 폐지를 통하여 현재 가입 중인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탈퇴 절차를 진행하고,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또한 폐지하여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고성군 남북교류협력기금 일반회계 전입 조치(201,607천원)

다. 합 의

- 복지지원과(성별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고성군공고 제2023-1245호

가) 예고기간: 2023. 7. 25. ~ 2023. 8. 14.(20일간)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4) 신·구조문대비표: 해당사항 없음
- 5)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5. 본문: 붙임과 같음

6. 전문위원 검토요지

□ 폐지 취지(필요성)

- 조례에 따른 실질적인 운영 및 사업실적이 없는 「고성군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한 남북교류 협력기금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하려는 것임.

□ 조례에 따른 주요 사업 및 기금 운용현황 검토

- 조례 제·개정 경과
 - 2019. 1. 21. 제24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남북관계 등 여건에 따른 조례 제정의 시의성을 충분히 검토하기 위해 심의 보류함.
 - 2020. 9. 15. 제25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기금 존속 기한을 2023.12.31.에서 2025.12.31.로 수정하여 가결함.
- 운영 및 사업실적
 - 제1기 고성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 15명[위원장(군수), 당연직 2, 위촉직 12], 임기 2020.10.22.~ 2022.10.21.
 - 2020.10.22. 2021년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계획안 심의
 - 2021.9.27.~9.29. 2022년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안 심의
 - 2022.11.4.~11.8. 2023년도 고성군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계획안 심의
 - 2021.6.28.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 조성액: 200,000천원(전입금 200,000천원, 이자수입 제외)
- 집행액: 5,000천원(2022년도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 종합의견

- 고성군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근거 마련을 위해 2020년에 조례를 제정하였고, 2021년 개정된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으나, 고성군이 실제 추진한 사업은 없음.
- 2021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과 2022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으로 2억원을 조성하여 비용자성사업비 5백만원을 집행하였고,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예치금 이자수입 6,664천원의 수입 외 다른 지출이 없어 사실상 2억원의 기금과 이자수입을 적립하고 있는 상황임.
- 남북관계와 국내외 정세에 따른 영향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등 현실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는 한편, 남북관계 전환 등을 대비한 사업추진 및 지원 근거 필요성 측면에서의 조례 존치를 감안한 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7.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위원회 회의록 기재)

8. 토 론 : 없음.

9. 심사결과 : 2023. 9. 13. 원안가결